

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 내용

1. 법령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개정 이유

- 장기요양기관 운영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감경 등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
-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·보완

주요 내용

- 1 장기요양기관 금지행위(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, 수급자 유인행위)
... 법 제 35조 제5항, 제6항 신설
- 2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신설 등 합리적 기준 마련
... 법 제 37조 제1항, 제3항, 제5항, 규칙 제29조 개정
- 3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... 법 제 37조의2 신설, 영 제15조, 제15조의2
- 4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 ... 법 제 37조의3, 제63조 제3호 신설, 영 제15조의3-제15조의5
- 5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... 법 제 37조의4 신설, 규칙 제29조의4
- 6 행정형벌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 ... 법 제 67조 개정
- 7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 및 부과권자 변경 ... 법 제 69조, 영 제29조 개정
- 8 법령 개정,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... 부칙

2. 장기요양기관 금지행위

취지

- 장기요양기관 운영질서 확립,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
- 본인일부부담금 면제·할인, 수급자 유인행위 금지

주요 내용 ... 자료 p1

- ➔ 법정 면제 또는 감경 받는 금액 외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금지(제35조제5항)
- 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(제35조제6항)
(위반시)
 - 행정처분기준 → 1차 위반(업무정지 1개월), 2차(3개월), 3차(지정취소, 폐쇄명령 1년)
 - 벌 칙 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사 례

- 수급자 유치관련 종사자에게 인센티브(현금, 수당, 급여인상 등)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경우
 -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
 - 비급여 항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등
- > 개별적으로 판단,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음

3. 행정처분대상 위반행위 신설 등 합리적 기준 마련



-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수급권 제약 (기관선택권, 서비스의 질 등) 으로부터 보호 필요

주요 내용

▶ **업무정지 개념 도입,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신설(제37조제1항, 제3항, 제5항)**

<행정처분대상 위반행위 추가>

신설된 처분대상 위반행위	처분 내용
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	지정취소(폐쇄명령) 또는 업무정지 6월 (최고한도)
수급자 알선·소개·유인 등	지정취소(폐쇄명령) 또는 업무정지 6월 (최고한도)
업무정지기간 중 급여제공	지정취소 (폐쇄명령)
지정취소(폐쇄명령)처분 받은 자(법인대표 포함)	1년간 설치 제한
업무정지기간 중인 자(법인대표 포함)	업무정지 6월 (최고한도)

3-1. 행정처분 합리적 기준 마련

주요 내용 ... 자료 p3

▶ 자료 제출 명령 등 위반행위 처벌유형 변경(제37조 제1항, 제3항)

위 반 행 위	종 전	변 경
제60조(공단 자료 제출 요구 등) 위반	지정취소(폐쇄명령)	처분제외
제61조 제1항 위반(복지부 보험가입자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) 위반	지정취소(폐쇄명령)	처분제외
제61조 제2항 위반(복지부장기요양기관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) 위반	지정취소(폐쇄명령)	지정취소(폐쇄명령) 또는 업무정지 6월(최고한도)

▶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(규칙 제29조, 별표2) ... 자료 p13

- 장기요양기관(제31조), 재가장기요양기관(제32조)간 처분기준 통일

▶ 행정처분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(제37조 제2항, 제3항)

- 시.군.구청장은 행정처분 내용 → 시.도 및 보건복지부 통보

▶ 재지정(신고)금지기간 법률에 명시(제37조제5항)

- 행정처분 이후 폐업기관 재지정신청 및 재설치 신고 제한요건을 법률로 상향
(재지정금지기간 등)

▶ 지정취소(폐쇄명령)처분 ⇒ 1년간, 업무정지처분 ⇒ 업무정지기간 동안(최대 6개월)

3-2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

주요 내용 - p14

- ▶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(경고-업무정지-지정취소, 폐쇄명령)
 -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적용
- ▶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
 - 6개월 범위 내, 각각의 업무정지기간 합산
- ▶ 부당청구 포함한 둘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
 - 6개월 범위 내, 부당청구 처분기준 우선 적용
 - 6개월 중 나머지 기간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정지기간 합산

지정취소(폐쇄명령) 대상 위반행위

- ①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
- ②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i) 폭행·상해, ii) 성희롱·성폭행, iii) 유기·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

3-3. 행정처분 감경기준 도입

주요 내용

▶ 하나의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등 고려,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

▶ 감경 제외사유

-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
- 법 제61조제2항의 현지조사 시 자료제출 명령위반, 거짓자료 제출, 질문·검사 거부, 방해·기피, 거짓 답변한 경우
-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·상해, 성폭력·성희롱, 유기·방임 행위가 발생한 경우

4. 업무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

취지

- 업무정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(수급자 정서적 안정, 가족 부담 완화)
- 그 기간 발생한 수입을 환수하여 공익 목적 및 처분의 효과성 제고

주요 내용 ... 자료 p4

▶ **법 제 37조의2(과징금의 부과 등) 신설** ...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군구청장 비금전적 위반행위와 금전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

(비금전적 위반행위)

- 시설·인력기준 위반 등에 따른 업무정지 시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

(금전적 위반행위)

-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시 부당청구금액의 최고 5배 이하

(과징금 부과요건)

- 업무정지처분으로 수급자 불편이 우려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

4-1. 업무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

- ➔ 「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같은한 과징금 적용 기준」 고시 … 자료 p16
- 수급자 불편 초래 등 과징금 부과요건 도입(제2조)

▪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

- ① 인근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 충족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②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% 이상인 경우.
다만, 30인 이하 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 이거나, 전체 현원의 30% 이상인 경우

▪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① 지자체, 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
- ②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인 장기요양기관
- ③ 처분절차 진행 중 폐업하거나, 법인시설이 변경되어 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업무정지가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
- ④ 2인 이상 공동개설기관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여 부당 금액 등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
- ⑤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4-2. 업무정지에 같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

▶ 과징금 신청방법(제3조)

-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이 과징금부과 요건에 해당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,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

▶ 과징금 부과할 수 없는 행위 ... 법 제37조의2 제1항단서,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1항

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

-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
-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(법 제 37조제1항제6호)

4-3. 과징금 부과기준

- ▶ 시행규칙(별표2)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에 과징금 부과하되, 과징금 산정은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
- ▶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경우(법 제37조 제1항제4호, 제3항제4호)

◇ 부당청구액 기준 과징금 부과 (부당금액의 5배 이내)

- ▶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한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이 포함된 업무정지 구간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
- ▶ 과징금 산정방식 : 업무정지기간 구간별 과징금 금액

< 업무정지기간 구간별 과징금 금액 >

구 분	업무정지기간 구간			
	10일까지	11일~30일까지	31일~50일까지	50일 초과
과징금 금액	총 부당금액의 2배	총 부당금액의 3배	총 부당금액의 4배	총 부당금액의 5배

4-3. 과징금 부과기준

➡ 시설·인력 배치기준 위반행위 등(법 제37조 제1항, 제3항 각호)

◇ 1일 기준 과징금 부과 (5천만원 이내)

▶ 시설, 인력이 설치기준 등*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연간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을 업무정지기간만큼 부과

▶ 과징금 산정방식 : 업무정지기간 × 1일당 과징금 금액*

* 1일당 과징금 : 연간 총수입금액(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+본인일부부담금)별로 과징금 표에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

< * 대상 위반행위 >

- ① 지정기준(설치기준) 위반행위 ②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③ 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 행위
- ④ 수급자 소개·알선·유인행위 ⑤ 자료제출 명령등 위반행위 ⑥ 종사자에 의한 (성)폭행 등 행위

* 법 제37조제1항제2호~제3호, 제3호의 2, 제3호의 3, 제5호, 제6호 일부, 법 제37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일부

➡ 두 종류 이상 장기요양급여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 시

- 각각의 연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각각 과징금 산정하고,
- 각각의 과징금 합하여 과징금 총금액으로 부과

5. 위반사실 등 공표

취지

- 수급자 및 보호자, 양수인의 알 권리 보호

주요 내용

▶ 법 제37조의3(위반사실 등의 공표), 시행령 제15조의3 ~ 제15조의5 신설

- 공표대상

- 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-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총 급여비용의 10% 이상인 경우

- 공표주체

- 시·군·구청장이 공표하되, 위반사실의 공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 시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
- 위반사실의 공표에 앞서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함

- 공표사항

- 위반사실, 처분내용, 장기요양기관의 명칭·주소, 장기요양기관 장의 성명
-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구별에 필요한 사항
(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급여종류, 지정·설치일 등)

5. 위반사실 등 공표

- 공표절차

- 공표대상기관 선정(시군구, 공표심의회) → 공표대상 사실통보(시군구청장) → 청문절차 진행 → 청문의견 검토(시군구, 공표심의회) → 공표(시군구청장)

- 공표방법

-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, 추가로 공단 홈페이지,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 가능
-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,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,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 가능

- 공표심의회위원회 구성·운영

- 시군구에 위원 수 5명(위원장 포함, 위원장은 호선)으로 구성
- 시민단체 추천인 1인, 법률전문가 1인, 현장실무경험자 1인, 지자체 소속 공무원 1인, 공단 소속 직원 1인
-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· 연임가능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6. 행정처분 효과 승계 도입

취지

- 지정취소 기관의 타인명의 수시 개.폐업 등 방지

주요 내용 ... 자료 p6

▶ 제37조의4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신설

-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되고,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 기관을 양도한 경우 등은 양수인 등에게 처분절차 계속 진행

(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 대상)

- ① 장기요양기관 양수인
- ② 합병으로 신설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
- ③ 기관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본인(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),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

(승계제외사유)

- ▶ 양수인 등이 양수,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

(처분사실 통보 의무화)

- ▶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내용(배달)증명 방법으로 알려야 함
- 행정처분청,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, 처분대상 위반행위, 행정처분의 적발일 또는 처분일 등 (규칙 제29조의4)

7. 행정형벌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

벌칙 대상 추가

- 법 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), 제32조(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)를 위반 미지정(미신고) 운영
- 제 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) 제5항, 제6항 을 위반한 경우

신설된 처분대상	처분 규정
○ 지정받지 않고 설치·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자	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○ 신고하지 않고 설치·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	
○ 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자	
○ 수급자 알선·소개·유인 및 이를 조장한 자	

7-1. 벌칙 정비

벌칙 규정 변경

▪ 기준 상향

-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

▪ 기준 하향

-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

위반 행위	종 전	변 경
○ 비밀누설자	2년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	2년이하 징역 / 2천만원 이하 벌금
○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자	2년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	1년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
○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		

7-2.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 및 부과권자 변경

▶ **과태료 적용대상 변경** ... 과태료(시행령 제29조, 별표 3), 최대 500만원 이하

위반 행위	종 전	변 경
○ 미신고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한 경우	과태료	처분제외
○ 거짓 신고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한 경우	과태료	
○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의무 위반한 경우	(신설)	과태료
○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한 경우		
○ 처분사실 통보의무 위반한 경우		
○ 거짓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경우	과태료	처분제외

▶ **과태료 부과권자 변경**

- 행정처분권자 일원화(보건복지부장관 ⇒ 시·군·구청장) *

▶ **과태료 경과조치**

- 법 시행('14.2.14)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(적발)일이 법령 개정 이후라도 법 개정 이전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

8. 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

행정처분 적용 관련 기준

- ▶ 처분적용 기준시점 ...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
 - 2014.2.14 이전 위반행위 ⇒ 종전 규정에 따름
- ▶ 처분 단위 ... 장기요양 급여 종별 ⇒ 장기요양기관 기호별
 - * 요양보험운영과-1408호(2014.3.26), -940호(14.2.28)

적용(예)

- ① 부당청구에 대한 적용
 - 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처분기준 적용
- ② 부당청구 위반행위 시점
 - 부당청구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행위 개시시점이 아닌 행위 종료시점 기준 적용
 - * 조사기간이 '13.3 - '14.3 : 행위 종료시점인 '14.3 행정처분 기준 적용
- ③ 부당청구 이외의 위반행위
 - 위반행위 사유별로 기준 적용(장기요양급여 거부, 자료제출 거부 등)

8-1. 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

위반행위 차수 산정

▶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한 경우

적용

① 부당청구 시

- 별표2 개정 규정에 따라 1차 위반기준 적용

② 지정기관

- 종전에 부당청구 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1회 처분 받은 자
⇒ 별표2 개정 규정에 따라 2차 위반기준 적용

③ 신고기관

- 종전에 부당청구 외 위반행위
⇒ 종전 위반행위 횟수는 별표2 개정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로 보아
처분기준 적용